

원회를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도록 함.

(3)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교육 여건을 유지·발전시키고,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 7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김신일**

**●법률 제8545호**

**私立學校法 일부개정법률**

私立學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私立學校法”을 “사립학교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조서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 5인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의 총장·학장·또는 초·중등학교의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경력 15년 이  
상인 자

4. 회계사로서 회계업무경력 15년 이상인 자

5. 교육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경력 15  
년 이상인 자

②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

③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  
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제25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  
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  
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3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중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의3제2항 중 “5년”을 “그 임명의 제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法律 第7802號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 부칙 제5조 중 “제22조제2호·제3호”를 “제2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결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시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임시이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시이사로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이유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와 각급학교의 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하고, 이사장의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경험과 사학경영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직업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사학현장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학교법인의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되,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함.

#### 나.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의무 완화(법 제23조제1항)

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만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법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임시이사의 선임·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이 5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

#### 다. 대학평의회의 기능 조정(법 제26조의2제1항)

대학평의회의 기능 중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과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자문사항으로 변경함.

#### 라. 각급학교의 장의 중임제한 완화(법 제53조제3항)

종전에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

마.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등에 대한 학교의 장의 임명제한 완화(법 제54조의3제3항)

종전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7년 7 월27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김 장 수  
국방부장관**

**◎법률 제8546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다.”를 “200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기한이 이미 지났으나, 아직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지급신청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